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39 발의연월일: 2024. 12. 27.

발 의 자: 민형배·김동아·정동영

이개호 • 양문석 • 이강일

이정문 • 이용선 • 윤준병

김태선 • 이수진 • 박지원

주철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핵결정 등으로 파면된 전직대통령에게 제공하는 외교관여권 발급 특혜를 박탈하고자 합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재직 중 탄핵결정으로 퇴임하 거나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전직대통령으로서 예우하지 않도록 규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권법」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와 달리 예우가 박탈된 전직대통령에 대해 외교관여권을 여전히 발급해 특혜 시비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탄핵결정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죄 또는 외환죄로 금고 이상의형을 선고받은 전직대통령의 외교관여권 발급을 제외하고자 합니다.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당연한 제재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조의3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 전직대통령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통령의 외교관여권 발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전 직대통령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3(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	제4조의3(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
자)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	자)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에게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u>다만, 탄핵결정에 의하여</u>
	파면되거나 「형법」 제2편제1
	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
	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전직대통령의 경우 그러하지
	<u>아니하다.</u>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